

#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## (강훈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3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12.

발의자 : 강훈식 · 김종회 · 정춘숙

기동민 · 안호영 · 김철민

윤후덕 · 임종성 · 최인호

민홍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·시행하고 있으나, 10년 단위계획이라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를 원활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따라서,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주기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4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) ① ~ ⑤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	제4조(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</u> <u>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</u> <u>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</u> <u>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.</u>